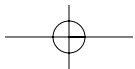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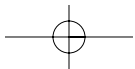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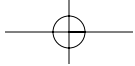
#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결과와 대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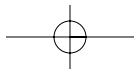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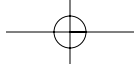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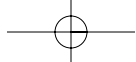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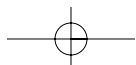
<b>1. 한미 FTA 협상결과</b>	<b>3</b>
가. 협상개요	
나. 농산물 양허안 협상결과	
다. 농업 협정문 주요 내용	
라. 농업 이외의 분과 협상 결과	
<b>2. 한미 FTA 국내대책 방향</b>	<b>17</b>
가. 기본방향	
나.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보전	
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라.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마. 향후 추진일정	
〈참고 1〉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결과	29
〈참고 2〉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 조정방안	36





F r e e T r a d e A g r e e m e n t

# 1\_한미 FTA 협상 결과





-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에 협상 종결 (4.2)
  - 여덟 차례 협상,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했고, 3. 26~4. 2 새벽까지 열린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
  - 농림부는 17개 분과, 2개 작업반 중 농업과 위생, 검역(SPS)분과 협상을 주관하고, 원산지·서비스 등 관련 분과에도 참여
  
-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높으나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여 충격을 최소화
  -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의 미국 관세는 대부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폐

- 농업협정문 내용은 상호 입장을 절충해 수입쿼터(TRQ)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마련
  
- 협정문 조항별로 세부사항까지 모두 반영한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문안조정 작업 필요



## 농산물 양허안 협상결과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오렌지(성출하기)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2014.1.1 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 철폐	냉동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1)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수입액 기준으로 25% 이상)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
  -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제외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 대두 :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 (3)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 식량 분야

- 식용 대두(487%)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25,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 사료용, 장류제조용 대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즉시 철폐

■ **식용 감자(304%)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3,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철폐

■ **보리, 맥주맥 · 맥아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제공**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2,500톤에서 매년 2% 증량

○ 맥아(269%), 맥주맥(513%) : 9,000톤에서 매년 2% 증량

**채소 · 특작, 과일 분야**

■ **채소 · 특작류**

○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3%), 참깨 · 참기름(630%), 땅콩(230.5%) : 15년 철폐, 18년 세이프가드

○ 인삼(222.8~754.3%) : 수삼, 백삼, 홍삼 등 7개는 18년 철폐 및 20년 세이프가드, 여타 품목은 15년 철폐 및 18년 세이프가드

■ **과일류**

○ 오렌지(50%) :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2,500톤, 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 사과(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세이프가드
  - 후지는 20년 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 (10년 세이프가드)
- 배(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 동양배 품종은 20년 철폐,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
- 포도(45%) : 계절관세
  -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4월말) 24%에서 시작 5년 철폐
- 감귤(144%), 키위(45%) : 15년 철폐
- 복숭아·단감(45%), 감(50%) : 10년 철폐

## ■ 견과류

- 호두 : 미탈각(45%) 15년 철폐, 탈각(30%) 6년 철폐
- 잣(566.8%), 밤(219.4%) : 15년 철폐
- 아몬드(8%), 피스타치오(30%) : 즉시철폐

## 축산 분야

### ■ 쇠고기(40%) : 15년 철폐

-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6개 세번은 세이프가드적용

■ 돼지고기(22.5~25%)

-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  
2개 세번은 10년 철폐 및 농산물 셰이프가드 적용
- 여타 세번은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

■ 닭고기(18~20%) : 10~12년 철폐

- 냉동 닭가슴살, 닭날개는 12년 철폐

■ 천연꿀(243%)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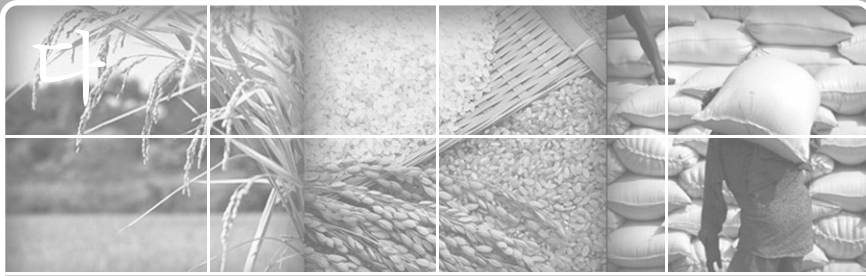
- 수입쿼타는 200톤에서 매년 3% 증량

■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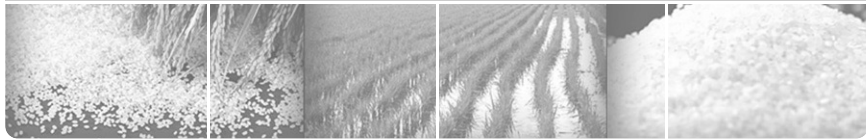
- 수입쿼타는 5,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치즈(36%) : 체다치즈 10년 철폐, 나머지 15년 철폐,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7,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농업 협정문 주요 내용



-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율이 핵심 쟁점
  - 품목별 양허내용을 반영하고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의견 접근
  - 수입쿼타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이 주장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의견접근
  -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
  
- 수입쿼타 관리방법에 대해 당초 미측은 선착순 관리방식을 고집했으나, 선착순·수입권 공매·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범 차별화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합의

- 농산물 셰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도입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셰이프가드 유지
    -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셰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사례 거의 없음
  
- 농업위원회의 설치 여부, 기능 등을 추가 협의 예정



## 농업 이외의 분과 협상 결과



### ■ 위생 및 검역(SPS) 분과

- FTA 발효 이후 양국간 SPS 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다만,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 마련
- 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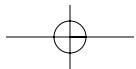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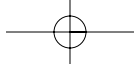
### ■ 원산지 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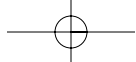
- 신선 농산물 및 민감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율 적용에만 해당되며,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



## ■ 서비스 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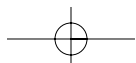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는 개방을 유보
  -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 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 시장, 공판장, 쿠파 수입)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함
  - 농지, 쌀 및 인삼·홍삼에 대한 유통서비스, 농촌지역 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 및 보리 도정업, RPC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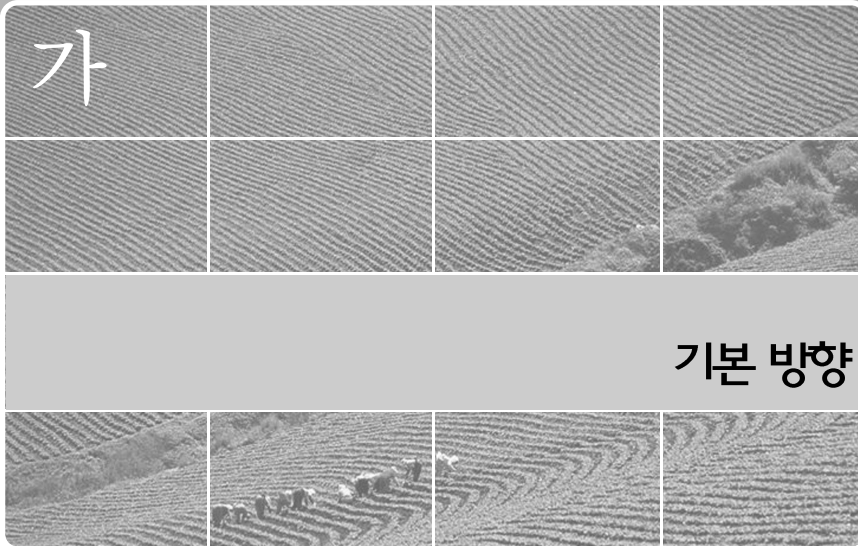




F r e e T r a d e A g r e e m e n t

## 2\_한미 FTA 국내 대책 방향





- ◇ 한미 FTA 협정 발효 전에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체계를  
완비하고 협정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
- ◇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

#### ■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자·종축산업 육성

■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 근본적 농업체질 강화 도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농업정책 대상으로 하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위험관리 강화
- 농가 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 다양한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으로 원활한 은퇴 유도
-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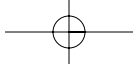
### ■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FTA특별법(제5조)의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으로 확대
  - \* 현행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기준과 요건은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FTA 이행지원기금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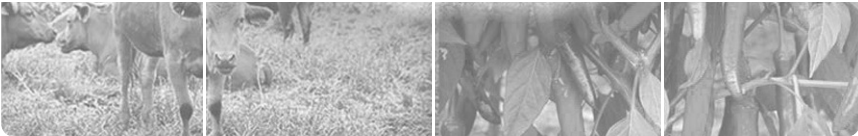
### ■ 폐업희망 농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산업(품목)간 구조조정 도모

- \* 현행 폐업지원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FTA농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 마련
- \* 현재는 실제 수입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재식재 금지기간 5년, 생산 및 폐기 시설물 철거시 순수익의 3년분 보상(양도는 1년)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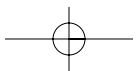
### 축산

#### ■ 쇠고기는 광역단위 우수브랜드 육성과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 차별화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에 실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단계적 확대 및 단속 강화
-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 고급화
  - \* 쇠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 : ('95) 12.8% → ('06) 44.5

#### ■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

- 환·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 억제
-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 닭·오리는 유통체계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

- 닭·오리고기 포장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 수입육과 구분
- '08년부터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낙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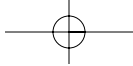
-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 강화
  - \* 총체보리 재배면적 : ( '05) 6,281ha → ( '06) 9,070ha
-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설치로 관리비 절감 도모

**원 예 분 야**

■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제고

- 당도가 높은(12브릭스 이상) 감귤 생산을 위해 다공질필름 및 비가림 시설 면적을 확대('06 : 8%)
-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포도는 비가림 시설 재배면적 확대

■ 채소류(고추·마늘·양파)는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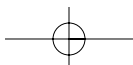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생산비 절감
- 마늘은 종구 갱신을 향상('06 : 40%)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종 교배품종을 조기에 육성

■ **인삼은 신품종 개발, 기계화율 제고,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 육성

**곡물·임산물**

- 식용콩·감자 등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
- 호두,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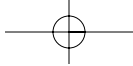


- ◇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중소농 : 규모화 촉진 + 소득안정직불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 취미·부업농 : 농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업농** : 규모화 및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

- 토지집약형 농업(쌀, 과수 등)은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축산 등)은 시설·장비 구입 자금 지원
  - 전업농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 일부 보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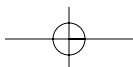
■ **적정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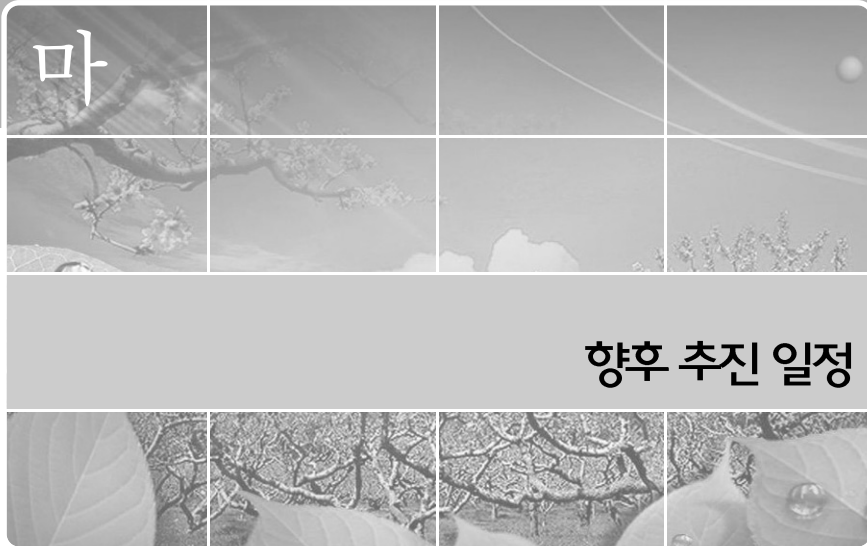
-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
- ‘농가등록제’ 를 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대상으로 지원

**고령농** :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방안 마련

■ **생계형 농업을 하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 검토**

- 관계부처 협의와 농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시기 등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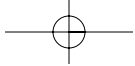
## 향후 추진 일정

### ■ 영양분석 실시(4월)

- 연구기관(KRED)의 영양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피해분석 실시
  - 객관성 · 신뢰성 있는 피해분석 결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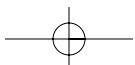
### ■ 국내보완대책 구체화(5~6월)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원조건 등을 보완하고 대상품목을 확대
-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구체화
-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농업 · 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119조원)을 조정



■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및 기금 규모 확충(7~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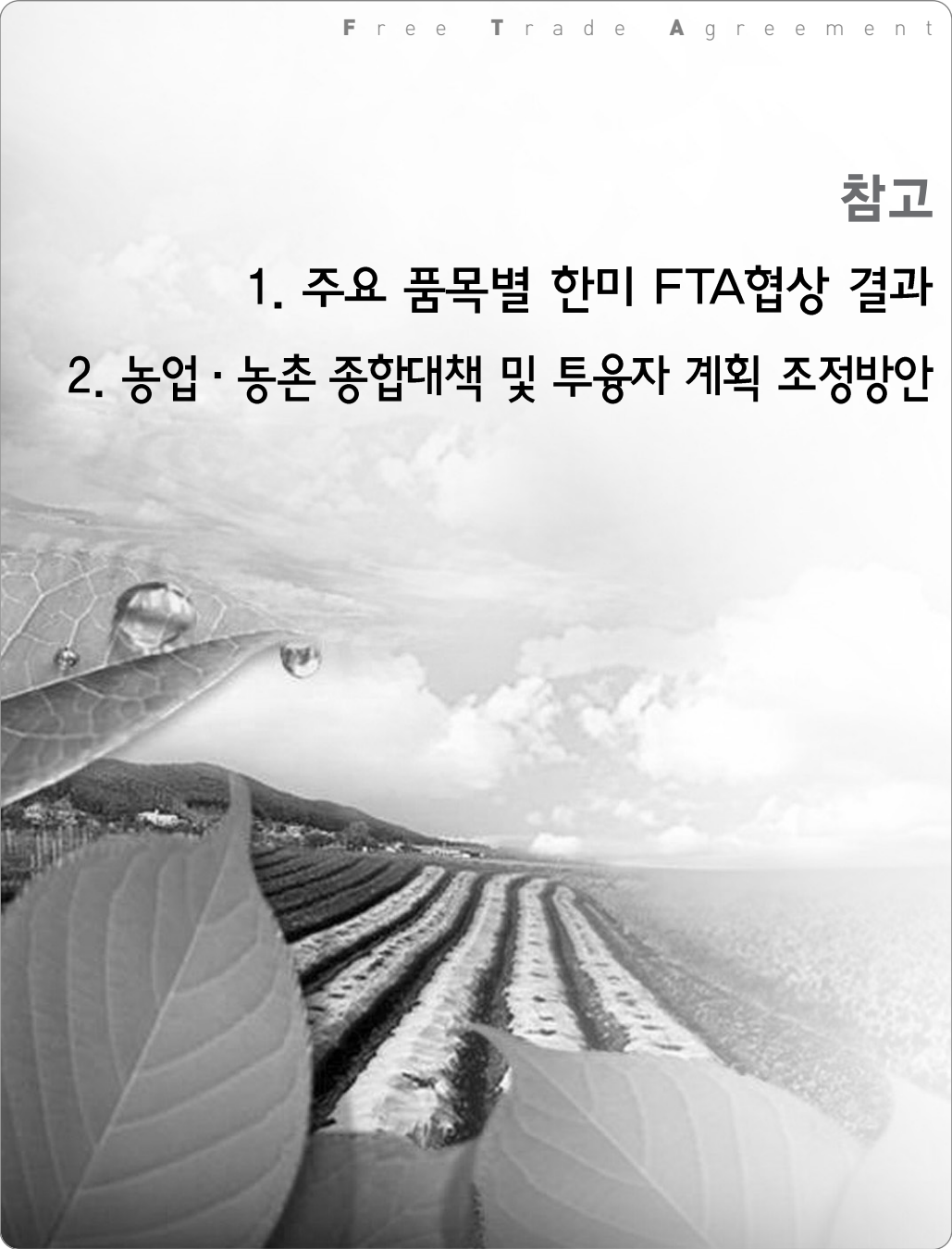
- 국내보완대책을 토대로 농업인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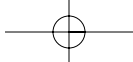


F r e e T r a d e A g r e e m e n t

## 참고

1. 주요 품목별 한미 FTA협상 결과
2.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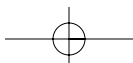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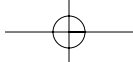
##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 식량작물 >>

품목명	협상 결과
쌀(관세화 유예)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25천톤(매년 3% 증량)
감자·감자분	○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 감자분(304%) :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5천톤(1년차)~6,524톤(10년차),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
보리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 쌀보리(299.7%) : 2,500톤(1년차)~3,299톤(15년차) - 맥아(269%) + 맥주맥(513%) : 9,000톤(1년차)~11,875톤(15년차)
옥수수	○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 93,774톤(1년차)~412,603톤(7년차) - 옥수수팝콘(630%) : 2,556톤(1년차)~11,875톤(7년차)
전분	○ 15년 또는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전분(226%) : 15년, 10,000톤(1년차)~15,126톤(15년차) - 변성전분(385.7%) : 10년, 14,000톤(1년차)~18,267톤(10년차)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 전분(800.3%) : 15년, 무관세쿼타 10톤 미만
기타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톤 미만 제공 - 팥(420.8%), 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 울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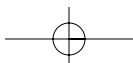






## 육류 &gt;&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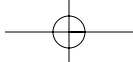
품목명	협상 결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li> <li>-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li> <li>-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li> </ul> </li> <li>○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목살 등)</li> <li>-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li> <li>-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li> </ul> </li> <li>○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li> <li>○ 소시지(18%) : 5년 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li> <li>○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41.6/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li> <li>○ 난황(27%) : 12년 철폐</li> <li>○ 종란(27%) : 10년 철폐</li> <li>○ 난백(8%) : 5년 철폐</li> </ul>
기타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li> <li>○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li> <li>○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li> <li>○ 녹용·녹각(20%) : 15년 철폐</li> </ul>



##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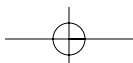
낙농품, 꿀, 사료 >>

품목명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지분유· 전지분유(176/TRQ 20~40%)· 연유(89/TRQ40%) : 현행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매년 3% 증량)</li> </ul> </li> <li>○ 혼합분유(36%) : 10년 철폐</li> <li>○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제공 700톤(매년 3% 증량)</li> </ul> </li> <li>○ 유당(49.5/TRQ 20%) : 5년 철폐</li> </ul>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다치즈(36%) : 10년 철폐</li> <li>○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li> <li>○ 치즈 무관세쿼타 7천톤 제공(매년 3% 증량)</li> </ul>
밀크와 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함량 60% 이하 : 15년 철폐</li> <li>- 기타 지방함량 60% 초과 : 12년 철폐</li> <li>- 냉동크림 지방함량 60% 초과 : 10년 철폐</li> </ul> </li> </ul>
버터 (89%,TRQ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li> </ul> </li> </ul>
유장 (49.5%,TRQ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3% 증량)</li> </ul> </li> <li>○ 사료용 : 즉시 철폐</li> </ul>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li> <li>○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li> </ul>
사료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용 근채류(100.5%/할당 2%) : 1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20만톤(증량없음)</li> </ul> </li> <li>○ 보조사료(50.6/TRQ5%) : 12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li> </ul> </li> <li>○ 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li> </ul>



## 과일 · 과채류 &gt;&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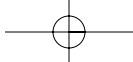
품목명	협상결과
오렌지(50%)	○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500톤(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감귤류(144%) 키위(45%)	○ 15년 철폐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복숭아, 단감(45%)	○ 10년 철폐
딸기(45%)	○ 신선초본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 5년 철폐 ○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딸기주스 : 10년 철폐 ○ 초본류딸기(조제저장처리) : 15년 철폐
토마토(45%)	○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주스, 케첩, 소스 :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 : 즉시 철폐
오이(27%)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는 5년 철폐)
가지(27%)	○ 즉시 철폐
호박(27%)	○ 즉시 철폐 (건조호박은 10년 철폐)
수박(45%)	○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양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명	협상 결과
고추(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6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li> </ul> </li> <li>○ 냉동고추 : 15년 철폐</li> </ul>
마늘(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마늘 · 깎마늘 · 일시저장 · 건조마늘</li> </ul> </li> <li>○ 냉동마늘 : 15년 철폐</li> <li>○ 초산조제 ·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li> </ul>
양파(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냉동양파 : 12년 철폐</li> <li>○ 초산조제 ·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li> </ul>
생강(3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생강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li> </ul>
파(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 파 : 7년 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 쪽파 : 5년 철폐</li> <li>○ 쪽파 · 기타파속채소 : 즉시 철폐</li> </ul>
인삼 (222.8~7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ASG 20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 및 홍삼 ·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li> <li>-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3%증량)</li> </ul> </li> <li>○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ASG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 등</li> </ul> </li> <li>○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li> <li>○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li> <li>○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li> </ul>
참깨, 참기름, 땅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li> <li>* 참깨 · 참기름(630%/WTO TRQ 40%),</li> <li>* 땅콩(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63.9%/WTO TRQ 4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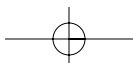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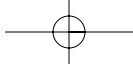
### 엽근채류 >>

품목명	협 상 결 과
당근(30%)	○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기타/신선/냉장 즉시, 신선/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 연뿌리·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채소 혼합주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퓨레콘 등)	○ 5년 철폐

### 가공식품 >>

품목명	협 상 결 과
설탕(50%)	○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ASG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혼합조미료(45%)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 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 그 이외 : 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 초코렛류, 파이&케이크 등 : 5년 철폐 ○ 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 ○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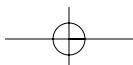




##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방안

### 기본 방향

- ◇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 농업경쟁력 및 소득보전 강화
- ◇ 소비자와 농촌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농식품·농촌정책 확대
  
- 농업정책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경영위험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
  - 규모화 경영을 주도할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장치 강화
  
- 농식품정책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지원
  - 기능성·편리성·향토성 등을 갖춘 농식품 개발과 상품화 추진
  
- 농촌정책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기초생활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원 확충
  - 읍·면 소재지의 교육·복지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 한미FTA 대책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내 조정안 확정

**기존대책(2004.2)**

**산업정책**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친환경·고품질 농업  
○신성장동력 확충

**소득정책** ○직불제 확충  
○농외소득 증대  
○경영안정 강화

**농촌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인프라 확충  
○농촌지역개발

**조정안**

**농업정책** ○전문인력·경영체 육성  
○농가소득·경영 안정  
○유통구조 혁신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정책** ○고품질·친환경 농식품 공급  
○농식품 안전성 관리  
○농식품 산업 육성

**농촌정책** ○교육·복지 여건 개선  
○농촌지역개발 촉진  
○농촌자원 산업화

